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벌칙 신설〉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82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김 윤 · 윤종균 · 정혜경 · 이병진 · 윤건영
안도걸 · 조인철 · 박정현 · 채현일 · 오세희 · 전진숙
황정아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22.

※ 의안번호 : 198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2%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 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7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재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와 불이익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 2.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1항¹⁾은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명시하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고 있으나,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해당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조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훈시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음에 따라 당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는 불이익이나 보복에 대한 우려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조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사후적으로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당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벌칙조항 신설 및 법정형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하게 당사자, 신고자 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하면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정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부패행위·공익신고 관련 법률에서는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2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② 사회적 약자(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법률에서는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③ 노동 관계 법률에서는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2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표-2] 불이익 조치 금지 관련 유사 입법례

구분	법률	불이익 조치 금지 내용	법정형
부패 행위·공익 신고	부패방지 권익위법 (\$62·90)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2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15·30)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2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적 약자	성폭력 방지법 (\$8·36)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폭력 방지법 (\$4의5·20)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처벌법 (\$10의2·62의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복지법 (\$59의5·86의2)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 관계	고용보험법 (\$105·116)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보험자자격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법 (\$81·90)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보험법 (\$111의2·127)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1항은 ‘누구든지 ~ ~ ~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는 당사자를 주체로 하는 피동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인 위반행위 주체(금지 의무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벌칙 조항의 실체 규정으로는 부적절하므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자를 주체로 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는 형식인 ‘누구든지 ~ ~ ~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²⁾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벌칙 적용을 위한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